

「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월 14일, 심현정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1월 2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·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월 2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심현정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지난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(11월)로 조정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의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개정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사업 마무리 시점인 제2차 정례회(11월)로 조정하고자 것으로,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1차 정례회”를 “제2차 정례회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4조(감사)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해마다 <u>제1차 정례회</u>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  략)</p>	<p>제4조(감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차 정례회</u> ----- ----- 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